

#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영옥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1394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10월 16일

발 의 자: 김영옥, 강석주, 유만희  
의원(3명)

찬 성 자: 남창진, 박성연, 서상열,  
신동원, 이상욱, 이성배,  
이종배, 최윤희 의원(8명)

## 1. 제안이유

- 최근 마약류 사범이 급증하고, 학원가 마약음료 등 마약류 피해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나, 현재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, 재활 프로그램 등이 분절적이고 마약류 대응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임.
- 이에 상담, 치료보호, 재활, 연구·교육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‘마약관리센터’를 도입하여 확산하는 마약류 피해에 대한 선제적, 통합적 대응체계 구축 및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 통해 마약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설치·운영 조항을 신설함(안 제6조).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참조
- 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##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 및 제7조, 제8조를 각각 제7조 및 제8조, 제9조로 하고,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6조(마약관리센터의 설치·운영) ① 시장은 마약류 중독자의 상담, 치료보호, 재활 등 통합 제공과 지역자원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 마약관리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마약류 중독자, 가족, 시민 대상 마약류 문제 정보제공, 단약지지 및 긴급 지원 등을 위한 상담 전화 운영
2. 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재활 등 의료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기반 연계 프로그램 등 운영
3. 마약류 사용의 예방과 치료 중재를 위한 조사 및 연구 수행
4. 마약류 중독자 상담·치료·재활 등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
5. 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약류 중독 관리 사업

③ 시장은 센터를 시립병원이 운영하거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및 재활 등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 의료시설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

영할 수 있다.

④ 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⑤ 시장은 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⑥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,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 전반에 대해 조사·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     행	개    정    안
<p>〈신    설〉</p>	<p>제6조(마약관리센터의 설치·운영) ①</p> <p><u>시장은 마약류 중독자의 상담, 치료보호, 재활 등 통합 제공과 지역 자원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서울시 마약관리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마약류 중독자, 가족, 시민 대상 마약류 문제 정보제공, 단약지지 및 긴급 지원 등을 위한 상담 전화 운영</u></li> <li>2. <u>마약류 중독자 치료 및 재활 등 의료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기반 연계 프로그램 등 운영</u></li> <li>3. <u>마약류 사용의 예방과 치료 중재를 위한 조사 및 연구 수행</u></li> <li>4. <u>마약류 중독자 상담·치료·재활 등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</u></li> <li>5. <u>그 외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약류 중독 관리 사업</u></li> </ol>

<p>제6조·제7조·제8조 (생략)</p>	<p>③ 시장은 센터를 시립병원이 운영하거나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및 재활 등에 전문성이 있는 민간 의료시설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④ 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</p> <p>⑤ 시장은 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⑥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,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 전반에 대해 조사·검사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제7조·제8조·제9조 (현행 제6조 및 제7조, 제8조와 같음)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문서 번호

2023101600000050

## 비용추계서

요청인 : 김영옥 의원

담당 : 오희선 과장  
이정수 팀장  
손제승 주무관

접수일 : 2023.10.16.

회신일 : 2023.10.25.

내용문의 : 02-2180-7954

###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#### 목 차

- I. 비용추계 요약
- 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

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 
재정분석담당관  
Seoul Metropolitan Council

## I. 비용추계 요약

### 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(마약관리센터의 설치·운영)의 규정을 변경·신설함에 따라 마약관리센터 설치·운영 비용이 발생

### 2. 비용추계의 전제

#### 가. 대상

- 제6조(마약관리센터의 설치·운영)의 규정을 변경·신설함에 따른 마약관리센터 설치·운영 비용

#### 나. 전제

- 서울시 시민건강국 제공자료(서울시 마약관리센터 조성 계획) 준용
- 마약관리센터 설치비는 1차년도 발생을 전제
- 비용은 2024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(2024~2028년) 이후에도 계속 발생
- 물가상승률 미반영

#### 다. 추계기간 : 시행일로부터 5년(2024년~2028년)

#### 라. 방법

- 서울시 시민건강국 제공자료를 준용하여 추계

### 3. 비용추계의 결과

- 총 비용 = 10,305,400천원(연평균 2,061,080천원)

(단위 : 천원)

구분 \ 연도		1차년도 (2024)	2차년도 (2025)	3차년도 (2026)	4차년도 (2027)	5차년도 (2028)	합계
세입	-	-	-	-	-	-	-
	소계(a)	-	-	-	-	-	-
세출	마약관리센터의 설치비 (안 제6조)	2,305,400	-	-	-	-	2,305,400
	마약관리센터의 운영비 (안 제6조)	1,600,000	1,600,000	1,600,000	1,600,000	1,600,000	8,000,000
	소계(b)	3,905,400	1,600,000	1,600,000	1,600,000	1,600,000	10,305,400
□ 총 비용(b-a)		3,905,400	1,600,000	1,600,000	1,600,000	1,600,000	10,305,400

주: 서울시 시민건강국 제공자료 준용

4. 덧붙이는 의견 : 없음

5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    재정분석담당관

담    당    관     오희선

추계세제팀장     이정수

주    무    관     손제승

☎ 02-2180-7954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---



## II. 비용추계의 상세내역

### 1. 비용요소

- 안 제6조(마약관리센터의 설치·운영)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마약관리센터 설치·운영 비용이 발생

### 2. 세부추계내역

가. 총비용 = 10,305,400천원

- 산출방식 =  $\sum_{i=1}^5 (\text{연간마약관리센터운영비})_i + \text{마약관리센터설치비}$

$i$  = 비용추계 연차(2024년~2028년)

나. 마약관리센터 설치·운영 연평균 비용 = 2,061,080천원

○ (마약관리센터 설치비 + 마약관리센터 운영비) ÷ 5년  
 = (2,305,400천원 + 8,000,000천원) ÷ 5년  
 = 2,061,080천원

- 마약관리센터 설치비<sup>1)</sup> = 2,305,400천원

- 마약관리센터 운영비 = 8,000,000천원  
 = 연간 마약관리센터 운영비 × 5년  
 = (인건비 + 사무관리비) × 5년  
 = (1,200,000천원 + 400,000천원) × 5년  
 = 8,000,000천원

#### 〈마약관리센터 설치·운영 관련 사업 연간 비용〉

(단위 :천원)

관련 조항	구 분	금 액
마약관리센터 설치(안 제6조)	공사비 등	2,305,400
마약관리센터 운영(안 제6조)	인건비	1,200,000
	사무관리비	400,000
합계		3,905,400

자료: 서울시 시민건강국 제공

1) 마약관리센터 설치비(건축비)는 1차년도만 발생함을 전제